

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9 (월) 신교선의원외 2
- 나. 회부일자 : 2005. 5. 23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5. 24(화) 제12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5. 24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신교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제도시행이후 전·현직 평창군의회 의원간의 화합 결속과 군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평창군 의회에 공익성의 의정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함 (안 제1조)
 - 지방자치 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조사·연구
- 평창군 의정회 구성 기준을 정함 (안 제2조)
 - 평창군의회의 전·현직의원으로 구성
- 평창군 의정회가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정함 (안 제3조)
- 사업계획 승인과 결산 등 의정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 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)
 - 매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 회원에게 보고
 - 매회계년도마다 사업실적을 보고
 -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위임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가 전·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평창군의정회를 조직하기 위한 것으로
-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구성이나 조문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.